

2021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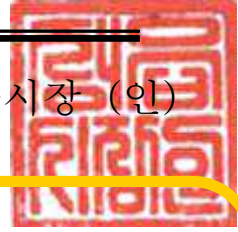
목 차

① 공통공시 총괄	2
② 예산규모	3
▪ 2-1 세입예산	3
▪ 2-2 세출예산	4
▪ 2-3 지역통합재정통계	6
③ 재정여건	7
▪ 3-1 재정자립도	7
▪ 3-2 재정자주도	8
▪ 3-3 통합재정수지	9
④ 재정운용계획	10
▪ 4-1 중기지방재정계획	10
▪ 4-2 성인지 예산현황	11
▪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2
▪ 4-4 성과계획서	18
▪ 4-5 재정운영상황개요서	18
▪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19
▪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0
▪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1
▪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3
▪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4
▪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5
⑤ 재정운용성과	26
▪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26
▪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6
▪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7
▪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7
※ 붙임 : 재정용어 해설	

2021년 정읍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 2. 28

정읍시장 (인)



- ◆ 우리시의 '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9,85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8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839억원)보다 2,011억원이 많습니다.
 - 그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38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7,425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2억원입니다.
 - ◆ 우리시의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9.8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7.90%입니다.
 - ◆ 우리시의 '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09억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의 재정은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비중이 낮은편으로서, 재정자립도 및 지방자주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낮으며, 이는 자체세입 증가는 정체인 반면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로 인한 재정지표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에서 보실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예산실 임 식(063-539-5079)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정 읍 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9,850	10,230	△380	7,839	7,665	174	
	세출예산(기금포함)	9,850	10,230	△380	7,839	7,665	17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9.88	9.49	0.39	12.79	12.32	0.47	
	재정자주도	57.90	57.96	△0.06	58.50	61.32	△2.82	
	통합재정수지	-110	-179	69	6	17	△11	
재정운영 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	9	△6	2	5	△3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60	68	△8	61	67	△6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3	1	2	3	1	2
		시책추진	4	4	0	3	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3	3	0	2	2	0	
	지방보조금	221	230	△9	178	172	6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 성과	보통교부세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는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으로 구분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세입개편 후 값을 작성.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정읍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 금
985,026	848,502	56,577	6,584	73,36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 규모

(단위 : 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34,171	821,975	936,344	1,022,991	985,02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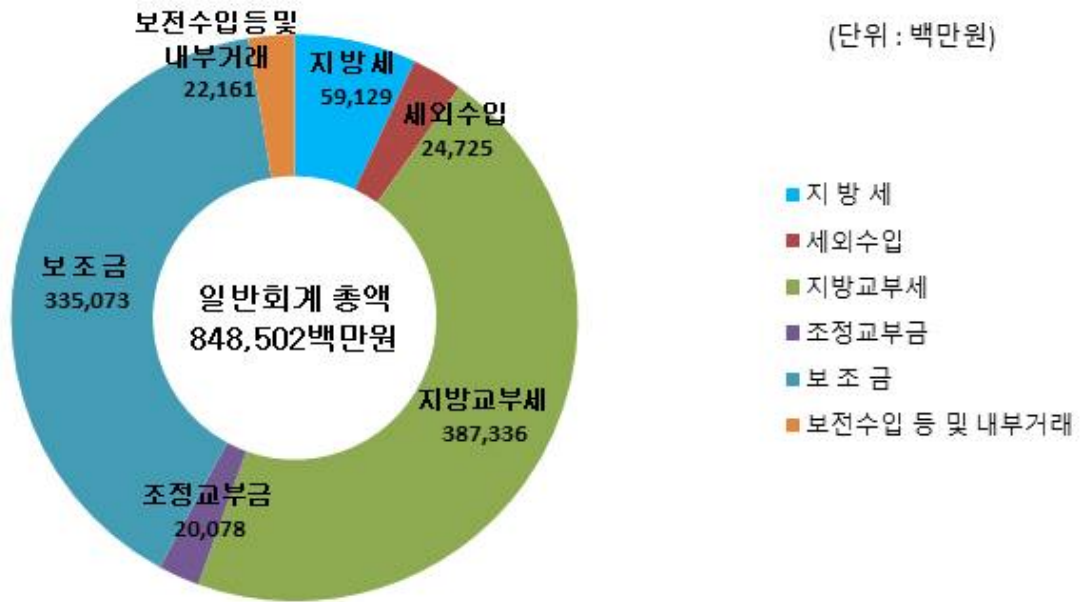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세입재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12,462	100	684,976	100	793,826	100	875,704	100	848,502	100
지방세	40,788	6.7	43,343	6.3	44,231	5.6	58,511	6.7	59,129	7.0
세외수입	16,613	2.7	19,790	2.9	22,908	2.9	24,630	2.8	24,725	2.9
지방교부세	290,185	47.4	339,307	49.5	369,419	46.5	404,652	46.2	387,336	45.6
조정교부금등	14,288	2.3	13,392	2.0	17,000	2.1	19,798	2.3	20,078	2.4
보조금	233,582	38.1	245,818	35.9	291,922	36.8	305,664	34.9	335,073	39.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006	2.8	23,326	3.4	48,346	6.1	62,449	7.1	22,161	2.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정읍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정읍시의 세출 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985,026	848,502	56,577	6,584	73,36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34,171	821,975	936,344	1,022,991	985,0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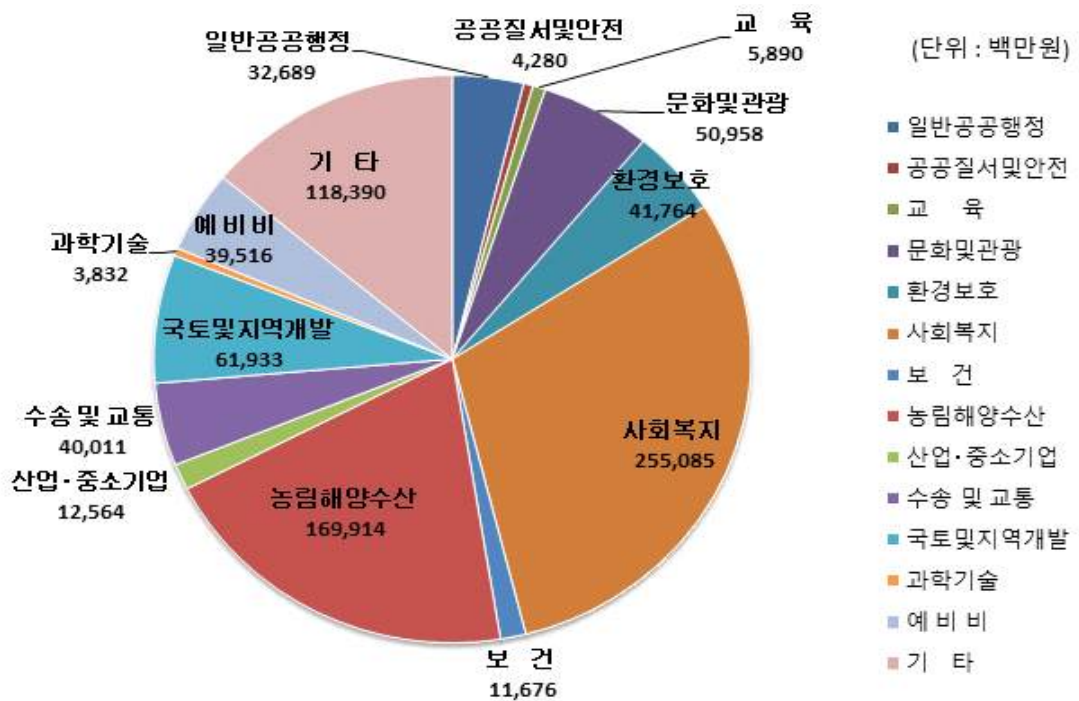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12,462	100	684,976	100	793,826	100	875,704	100	848,502	100		
일반공공행정	28,724	4.7	35,383	5.2	29,355	3.7	31,723	3.6	32,689	3.8		
공공질서및안전	5,187	0.9	10,618	1.5	10,446	1.3	8,883	1.0	4,280	0.5		
교육	5,691	0.9	5,900	0.9	7,636	1.0	5,710	0.6	5,890	0.7		
문화및관광	34,466	5.6	35,092	5.1	48,448	6.1	56,964	6.5	50,958	6.0		
환경보호	27,272	4.4	34,603	5.1	44,736	5.6	50,258	5.7	41,764	4.9		
사회복지	169,528	27.7	185,653	27.1	210,884	26.6	237,122	27.1	255,085	30.1		
보건	10,822	1.8	10,974	1.6	13,947	1.8	12,803	1.5	11,676	1.4		
농림해양수산	132,492	21.6	143,851	21.0	151,165	19.0	182,855	20.9	169,914	20.0		
산업·중소기업	15,199	2.5	13,841	2.0	9,916	1.2	9,052	1.0	12,564	1.5		
수송 및 교통	33,668	5.5	45,834	6.7	60,281	7.6	62,950	7.2	40,011	4.7		
국토및지역개발	35,955	5.9	47,369	6.9	84,160	10.6	72,487	8.3	61,933	7.3		
과학기술	2,011	0.3	2,062	0.3	3,255	0.4	5,791	0.7	3,832	0.4		
예비비	11,449	1.9	10,165	1.5	14,700	1.9	27,927	3.2	39,516	4.7		
기타	99,998	16.3	103,631	15.1	104,897	13.2	111,179	12.7	118,390	14.0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A)	비 율 (B-A)/A
합 계	1,025,884	988,098	-37,786	-3.68%
정 읍 시	1,022,991	985,026	-37,965	-3.71%
공사·공단	-	-	-	-
출자·출연기관	2,893	3,072	179	6.19%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사·공단 : 없음
- ▶ 출자·출연기관(1개) :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우리 정읍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9.8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및 내부거래등(E)
개편후	9.88	848,502	83,854	742,487	-	22,161
개편전	12.49	848,502	106,015	742,487	-	-

▶ 일반회계기준, 개편전 자료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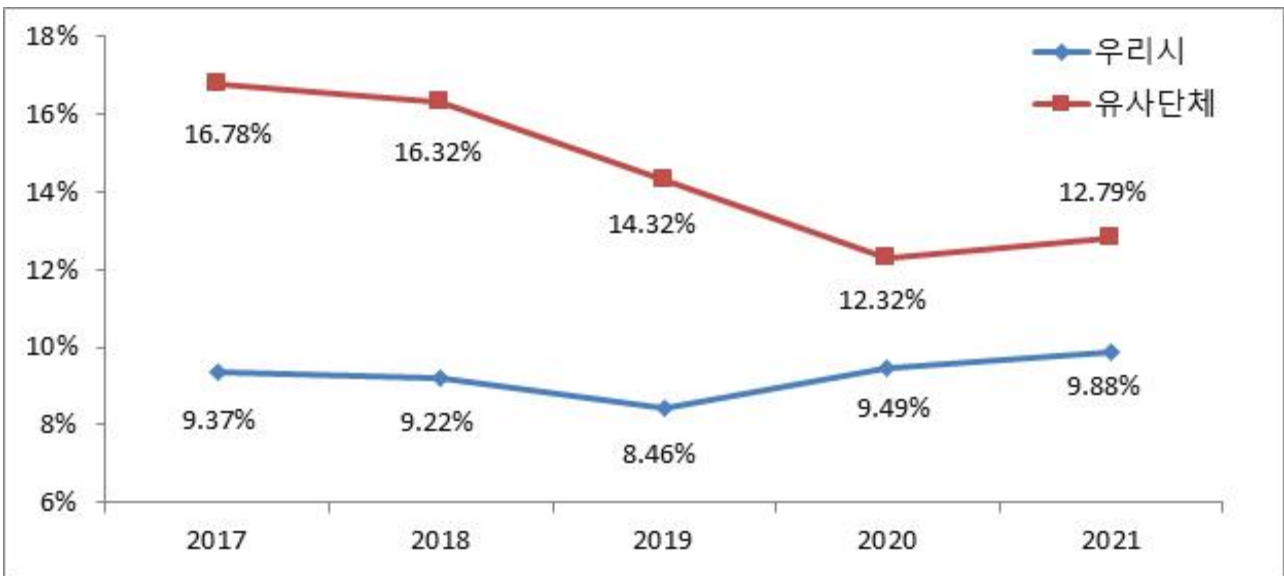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개편후	9.37	9.22	8.46	9.49	9.88
개편전	12.15	12.62	14.55	16.63	12.4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 2021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구조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838억원(10%)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3,873억원(46%), 조정교부금 201억원(2%), 국도비보조금 3,351억원(4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2억원(2%)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정읍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7.90%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등 내부거래(E)
개편후	57.90	848,502	491,268	335,073	-	22,161
개편전	60.51	848,502	513,429	335,073	-	-

- ▶ 일반회계기준, 개편전 자료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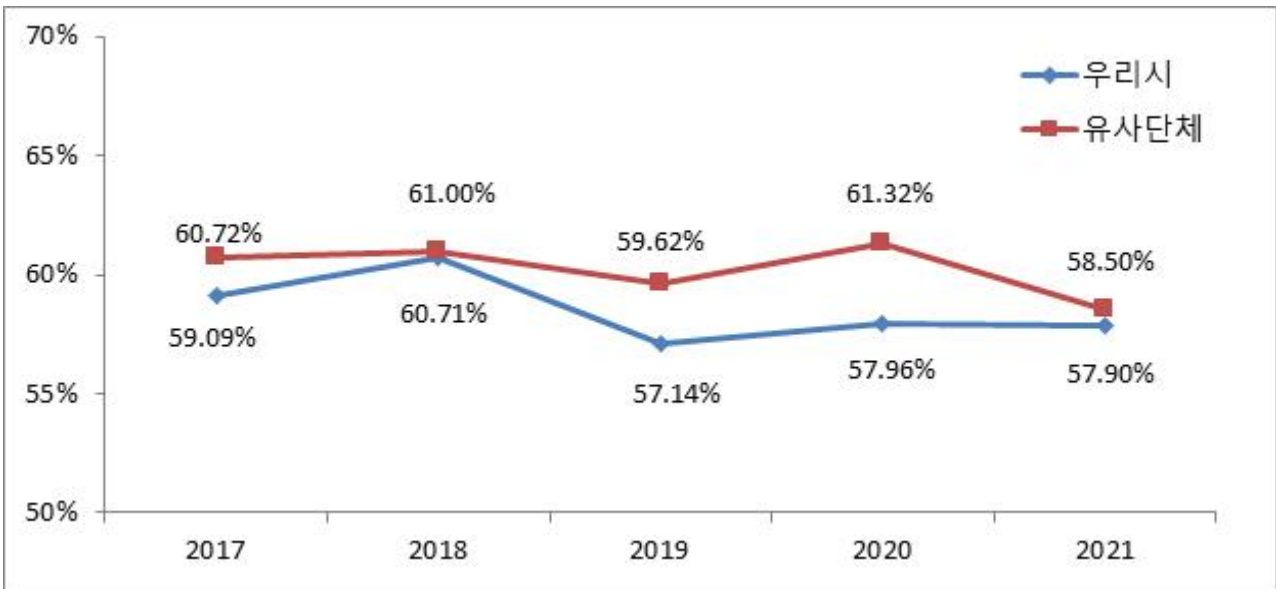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개편후	59.09	60.71	57.14	57.96	57.90
개편전	61.86	64.11	63.23	65.10	60.5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수 있는 예산비율로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수 있는 지표로서, 2021년 자체수입(838억원) 및 지방교부세(3,873억원), 조정교부금(201억원)을 포함한 재정자주도는 57.90%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임.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정읍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용자회수 (C)	용자지출 (D)	순용자 (E=D-C)	순세계 잉여금(F)			
총 계	878,025	916,683	51	1,020	969	28,642	917,652	-39,627	-10,985
일반회계	826,341	834,852	-	60	60	22,161	834,912	-8,571	13,590
기타특별회계	1,008	5,090	-	790	790	2,470	5,880	-4,872	-2,402
공기업특별회계	43,014	56,334	-	-	-	4,011	56,334	-13,320	-9,309
기 금	7,662	20,407	51	170	119	-	20,526	-12,864	-12,86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용자(용자지출-용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이전수입)+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이전수입)+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15,524	-19,311	-54,295	-87,355	-39,627
통합재정수지 2	2,538	4,567	-1,222	-17,932	-10,985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1,105,617	1,092,293	1,095,485	1,099,751	1,110,454	5,503,600	0.10%
자 체 수 입	118,706	119,188	119,895	118,892	119,770	596,451	0.20%
의 존 수 입	879,513	884,777	890,801	900,469	912,003	4,467,563	0.90%
지 방 채	-	-	-	-	-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7,398	88,328	84,789	80,390	78,681	439,586	-7.50%
② 세 출	1,105,617	1,092,293	1,095,485	1,099,751	1,110,454	5,503,600	0.10%
경 상 지 출	217,880	215,130	220,630	214,236	212,231	1,080,107	-0.70%
사 업 수 요	887,737	877,163	874,855	885,515	898,223	4,423,493	0.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기타), 기금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정읍시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7	138,239
여성정책추진사업	17	9,16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5	123,97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5,099

▶ 당초예산 기준

●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이란 ?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 사업이란 ?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 다음은 정읍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848,502	4,620	-	-

-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 2021년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177건	4,620	
주민주도형	도시재생과	시기동 대흥2길 소방도로 개설	145	
주민주도형	도시재생과,내장상동	선비정신의 함양 구하자 마을 조성	20	
주민주도형	건 설 과	신태인읍 연지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28	
주민주도형	건 설 과	신태인읍 태화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37	
주민주도형	건 설 과	신태인읍 산전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32	
주민주도형	건 설 과	신태인읍 원백산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25	
주민주도형	건 설 과	북면 신촌마을 배수로정비공사	45	
주민주도형	건 설 과	북면 서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주민주도형	건 설 과	북면 사거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주민주도형	건 설 과	북면 장구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24	
주민주도형	건 설 과	입암면 접지리 녕메길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	140	
주민주도형	건 설 과	소성면 재경마을 농로포장	32	
주민주도형	건 설 과	소성면 원두마을 농로포장	29	
주민주도형	건 설 과	소성면 외동마을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25	
주민주도형	건 설 과	고부면 덕안마을 농로포장공사	35	
주민주도형	건 설 과	고부면 마정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	25	
주민주도형	건 설 과	고부면 양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25	
주민주도형	건 설 과	영월면 운학리 배수로 정비공사	36	
주민주도형	건 설 과	덕천면 중하마을 배수 개선공사	36	
주민주도형	건 설 과	덕천면 전림마을 배수 개선공사	25	
주민주도형	건 설 과	덕천면 대죽마을 용배수로 설치공사	30	
주민주도형	건 설 과	덕천면 도계마을 농로확포장공사	23	
주민주도형	건 설 과	덕천면 용전~내정마을 아스콘 재포장 공사	26	
주민주도형	건 설 과	이평면 덕천천 제방 농로 정비공사	30	
주민주도형	건 설 과	이평면 오하선(이평201) 확포장공사	45	
주민주도형	건 설 과	이평면 팔선리 진입로 정비공사	50	
주민주도형	건설과,교통과	이평초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정비	55	
주민주도형	건 설 과	정우면 대서마을 농로포장공사	30	
주민주도형	건 설 과	정우면 남산마을 농로포장공사	40	
주민주도형	건 설 과	정우면 대정마을 안길 포장 및 하수도 정비공사	40	
주민주도형	건 설 과	태인면 하중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30	
주민주도형	건 설 과	태인면 과학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25	
주민주도형	건 설 과	태인면 군도24호 배수로 정비공사	75	

구 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건설과	감곡면 소제마을 농로포장공사	24	
주민주도형	건설과	용동면 제내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40	
주민주도형	건설과	용동면 작소마을 안길 법면 석축공사	30	
주민주도형	건설과	용동면 용호마을 농로확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30	
주민주도형	건설과	용동면 수암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40	
주민주도형	건설과	칠보면 동진강변 산책로 정비공사	60	
주민주도형	건설과	칠보면 동진강 셋강 등나무 그늘 조성공사	20	
주민주도형	건설과	칠보면 건흥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35	
주민주도형	건설과	칠보면 여옥마을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5	
주민주도형	건설과	칠보면 원반마을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5	
주민주도형	건설과	산내면 신기마을 농배수로 설치공사	30	
주민주도형	건설과	산외면 사가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30	
주민주도형	건설과	수성동 오정마을 가드레일 설치 및 용배수로 정비	35	
주민주도형	건설과	수성동 주공1단지 옆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30	
주민주도형	건설과	장명동 매기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140	
주민주도형	건설과	내장상동 대석마을 아스콘재포장 공사	37	
주민주도형	건설과	내장상동 송학마을 배수로정비 및 농로확장 공사	35	
주민주도형	건설과	초산동 초산약수 효도길 정비공사(아스콘 재포장)	100	
주민주도형	건설과	연지동 5통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45	
주민주도형	건설과	연지동 11통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50	
주민주도형	건설과	연지동 15통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45	
주민주도형	건설과	농소동 상혹 마을진입로 아스콘덧씌우기	45	
주민주도형	건설과	농소동 야룡마을 농로포장공사	39	
주민주도형	건설과	상교동 칠정마을 수로관 및 배수로 정비공사	24	
주민주도형	신태인읍	신태인읍 금화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18	
주민주도형	신태인읍	신태인읍 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30	
주민주도형	신태인읍	신태인읍 우범취약지역 가로보안등 설치	12	
주민주도형	신태인읍	신태인읍 마을 방송 앰프 설치	18	
주민주도형	북면	북면 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35	
주민주도형	북면	북면 우범취약지역 가로보안등 설치	15	
주민주도형	북면	북면 불법쓰레기투기 감시용 CCTV설치	10	
주민주도형	북면	북면 월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1	
주민주도형	입암면	입암면 주요 도로변 범죄 및 불법쓰레기 예방 CCTV 설치	40	
주민주도형	입암면	입암면 천원천 향기꽃길 조성사업	20	
주민주도형	소성면	소성면 용정리 농로포장 공사	21	
주민주도형	소성면	소성면 화룡리 농로정비 및 배수로 설치	18	

구 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소 성 면	소성면 광조마을 배수로 및 농로정비	15	
주민주도형	소 성 면	소성면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60	
주민주도형	고 부 면	고부면 마스크 구입(KF94)	10	
주민주도형	고 부 면	고부면 하계 방역소독 실시	20	
주민주도형	고 부 면	고부면 김장김치 지원사업	6	
주민주도형	고 부 면	고부면 쓰레기투기방지 감시카메라 설치	33	
주민주도형	고 부 면	고부면 방치 슬레이트 처리	10	
주민주도형	고 부 면	고부면 고부천 꽃길가꾸기	10	
주민주도형	고 부 면	고부면 응급복구 장비임차	6	
주민주도형	고 부 면	고부면 만화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주민주도형	영 원 면	영원면 백양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영 원 면	영원면 애성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2	
주민주도형	영 원 면	영원면 탑립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10	
주민주도형	영 원 면	영원면 풍월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영 원 면	영원면 풍양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영 원 면	영원면 연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2	
주민주도형	영 원 면	영원면 문화재 및 관광안내판 설치	15	
주민주도형	영 원 면	영원면 야외운동기구 설치	10	
주민주도형	영 원 면	영원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10	
주민주도형	영 원 면	영원면 나눔의 정 김장김치 담그기	10	
주민주도형	영 원 면	영원면 관내 소공원 조성사업	15	
주민주도형	덕 천 면	덕천면 마을단위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정비	10	
주민주도형	덕 천 면	덕천면 덕천사거리 회전교차로 정비 및 화단조성	20	
주민주도형	덕 천 면	덕천면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CCTV설치	15	
주민주도형	덕 천 면	덕천면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설치	15	
주민주도형	이 평 면	이평면 연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주민주도형	이 평 면	이평면 마을방향표지판 설치	5	
주민주도형	정 우 면	정우면 덕촌마을 앞 농로포장공사	16.5	
주민주도형	정 우 면	정우면 삼산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4.5	
주민주도형	정 우 면	정우면 양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9	
주민주도형	정 우 면	정우면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설치	20	
주민주도형	정 우 면	정우면 관내 유희지 화단조성사업	40	
주민주도형	태 인 면	태인면 시기마을 공용주차장 정비공사	10	
주민주도형	태 인 면	태인면 마을단위 앰프 설치	15	
주민주도형	태 인 면	태인면 마을게시판 확충사업	20	
주민주도형	태 인 면	태인면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설치	25	

구 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감 곡 면	감곡면 용오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4.4	
주민주도형	감 곡 면	감곡면 진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2.1	
주민주도형	감 곡 면	감곡면 유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8.7	
주민주도형	감 곡 면	감곡면 삼평지구 농로포장공사	15	
주민주도형	감 곡 면	감곡면 녹동마을 우수관 정비공사	13.6	
주민주도형	감 곡 면	감곡면 학당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16	
주민주도형	감 곡 면	감곡면 소유치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16	
주민주도형	감 곡 면	감곡면 학이마을 그레이팅 교체공사	10.2	
주민주도형	감 곡 면	감곡면 과반마을 우물정비	10	
주민주도형	감 곡 면	감곡면 감곡면 관내 반사경 설치	10.6	
주민주도형	감 곡 면	감곡면 감곡면 관내 가로등 설치	14.4	
주민주도형	감 곡 면	감곡면 소하천내 역류방지 수문설치	25	
주민주도형	용 동 면	용동면 가로등 설치 및 보수	20	
주민주도형	용 동 면	용동면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40	
주민주도형	칠 보 면	칠보면 장구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15	
주민주도형	칠 보 면	칠보면 대흥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10	
주민주도형	칠 보 면	칠보면 신기마을 농로포장공사	10	
주민주도형	산 내 면	산내면 종합체육센터 건강증진실 설치	110	
주민주도형	산 내 면	산내면 산책로 및 인도조성구간 보강정비	20	
주민주도형	산 내 면	산내면 장금이 꽃밭조성	10	
주민주도형	산 내 면	산내면 마을별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 보관함 구입	30	
주민주도형	산 외 면	산외면 진입노선 환경정비	60	
주민주도형	산 외 면	산외면 외목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주민주도형	산 외 면	산외면 민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산 외 면	산외면 공동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20	
주민주도형	산 외 면	산외면 신촌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20	
주민주도형	산 외 면	산외면 도원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9	
주민주도형	산 외 면	산외면 화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3	
주민주도형	산 외 면	산외면 죽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3	
주민주도형	수 성 동	수성동 박동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14	
주민주도형	수 성 동	수성동 오정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12	
주민주도형	수 성 동	수성동 군대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17	
주민주도형	수 성 동	수성동 용흥제 옆 농배수로 정비공사	7	
주민주도형	수 성 동	수성동 오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	
주민주도형	수 성 동	수성동 군대마을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	15	
주민주도형	수 성 동	수성동 방법용 CCTV 설치사업	30	

구 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수 성 동	수성동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설치사업	10	
주민주도형	수 성 동	수성동 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20	
주민주도형	장 명 동	장명동 소공원 정비사업	60	
주민주도형	내장상동	내장상동 행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2	
주민주도형	내장상동	내장상동 회룡마을 안길 안전웬스 설치	10	
주민주도형	내장상동	내장상동 해오름마을 안길 안전웬스 설치	20	
주민주도형	내장상동	내장상동 휴먼시아 배수로 정비공사	16	
주민주도형	내장상동	내장상동 보라보라! 라벤더 화단 조성사업	30	
주민주도형	내장상동	내장상동 작은 음악회 개최	30	
주민주도형	시 기 동	시기동(청수동)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	40	
주민주도형	시 기 동	시기동 주민과 함께하는 꽃길 조성	10	
주민주도형	시 기 동	시기동 CCTV 유지·보수	5	
주민주도형	초 산 동	초산동 정읍남로 등산길 명품 가로환경 조성	60	
주민주도형	초 산 동	초산동 초산약수 효도길 정비공사(쉼터조성)	20	
주민주도형	초 산 동	초산동 초산약수 효도길 정비공사(가로환경 정비)	20	
주민주도형	연 지 동	연지동 환경정비사업	20	
주민주도형	연 지 동	연지동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설치	20	
주민주도형	연 지 동	연지동 차 나눔 봉사활동 추진	20	
주민주도형	농 소 동	농소동 용계마을 농로 석축공사	14	
주민주도형	농 소 동	농소동 망제동 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농 소 동	농소동 용계마을 농로포장공사	22	
주민주도형	농 소 동	농소동 마을방범 CCTV 교체 및 신규설치	40	
주민주도형	농 소 동	농소동 가가호호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20	
주민주도형	상 교 동	상교동 계화마을 농로개설 및 포장공사	11	
주민주도형	상 교 동	상교동 용흥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5	
주민주도형	상 교 동	상교동 삼산마을 안길 석축공사	13	
주민주도형	상 교 동	상교동 삼군마을 수로관 확장 설치공사	12	
주민주도형	상 교 동	상교동 과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7	
주민주도형	상 교 동	상교동 삼군마을 진입 차량 교차구간 설치공사	22	
주민주도형	상 교 동	상교동 신구뜰 농로포장 공사	11	
주민주도형	상 교 동	상교동 칠정마을 보호수 쉼터조성	12	
주민주도형	상 교 동	상교동 복룡 반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5	
주민주도형	상 교 동	상교동 용수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4	
주민주도형	상 교 동	상교작은도서관 이용객 편의공간 확충	24	
주민주도형	상 교 동	상교동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CCTV 설치	20	
주민주도형	상 교 동	상교동 시민(구계마을)정원 만들기	20	

4-4. 성과계획서

-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정읍시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77	266	229	855,086	882,528	-27,442
의회사무국	1	1	3	2	1,851	1,898	-47
직속기구	1	5	16	25	76,774	63,008	13,766
문화행정국	1	9	45	28	115,131	114,812	319
복지교육국	1	16	36	41	268,169	251,095	17,074
경제환경국	1	19	44	35	97,672	97,956	-284
도시안전국	1	9	39	32	114,669	168,699	-54,030
보 건 소	1	4	16	12	12,145	13,260	-1,115
농업기술센터	1	6	39	43	125,828	123,895	1,933
사 업 소	1	8	28	11	28,660	35,931	-7,271
읍 면 동	-	-	-	-	14,187	11,974	2,21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총액중 인건비의 비율
9.88	57.90	30.06	24.43	60.01	114.4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911,663	348	57	291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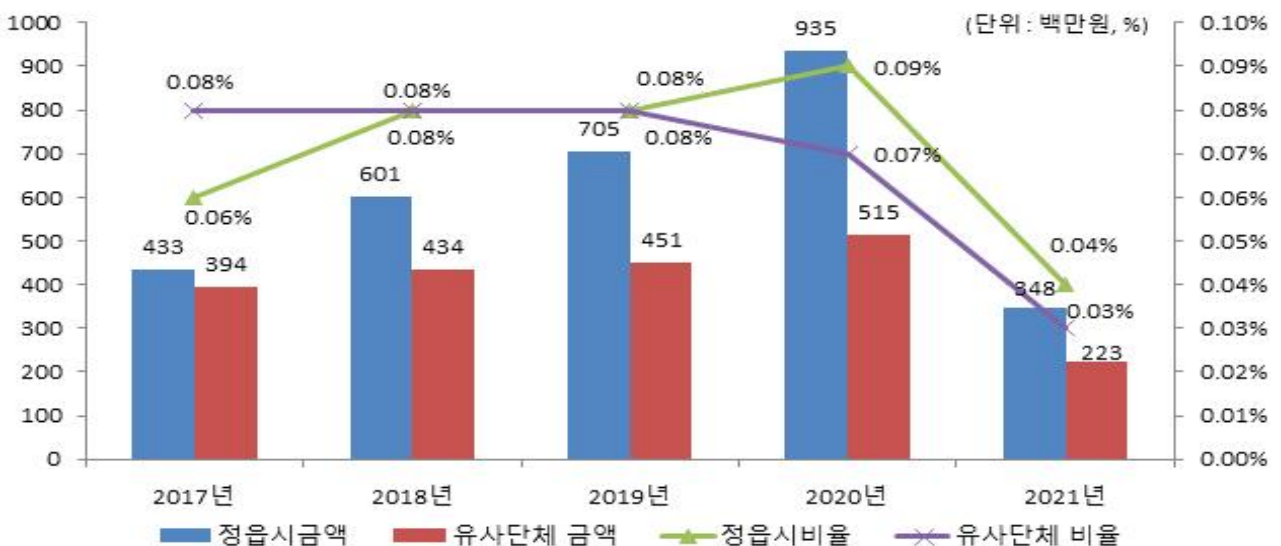
❖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 (A)	669,019	741,305	851,204	939,579	911,663
국외여비 총액 (B=C+D)	433	601	705	935	348
국외업무여비 (C)	51	51	72	165	57
국제화여비 (D)	382	550	633	770	291
비 율	0.06	0.08	0.08	0.09	0.04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다음은 우리 정읍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48,502	5,997	0.71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651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2,573백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743백만원), 행사관련시설비(3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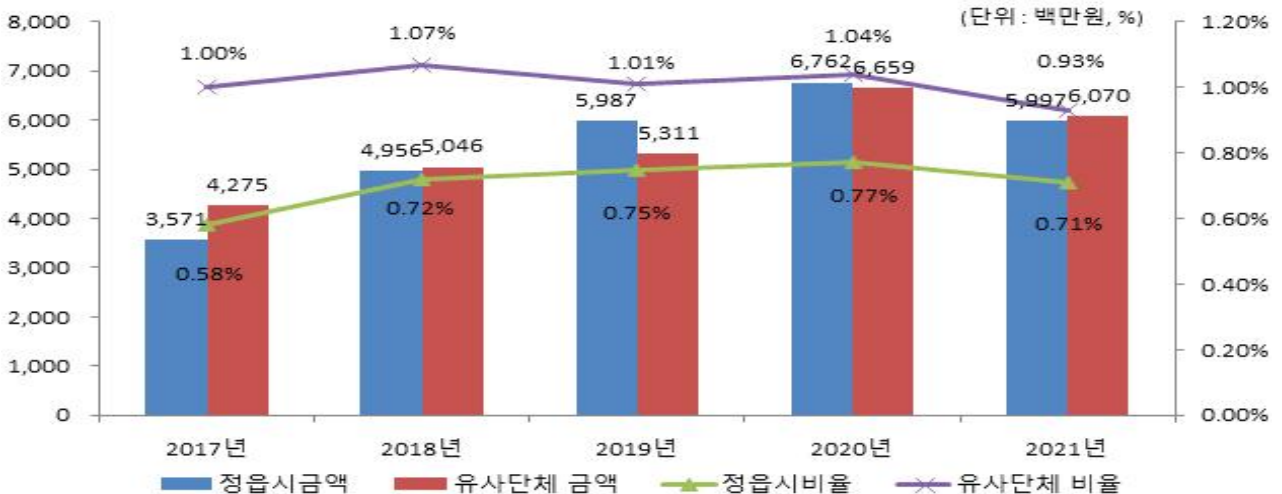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612,462	684,976	793,826	875,704	848,502
행사·축제경비	3,571	4,956	5,987	6,762	5,997
비 율	0.58	0.72	0.75	0.77	0.71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읍시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비율(B/A)
	소 계	단 체 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10	310	79	56	17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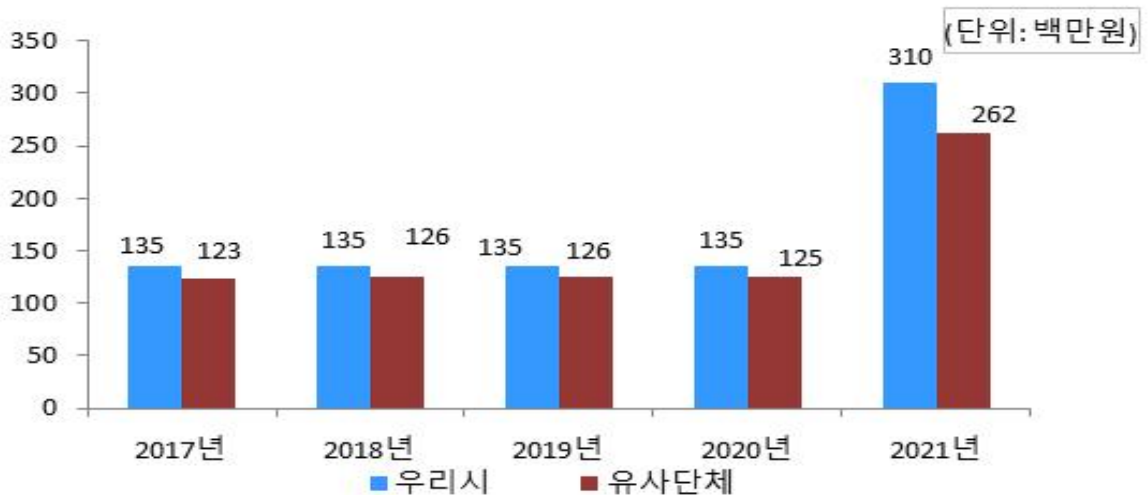
❖ 단체장 · 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35	135	135	135	310

▶ 2021년 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금액 175백만원이 추가되었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 준 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71	369	99.46

❖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65	365	366	367	36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우리 정읍시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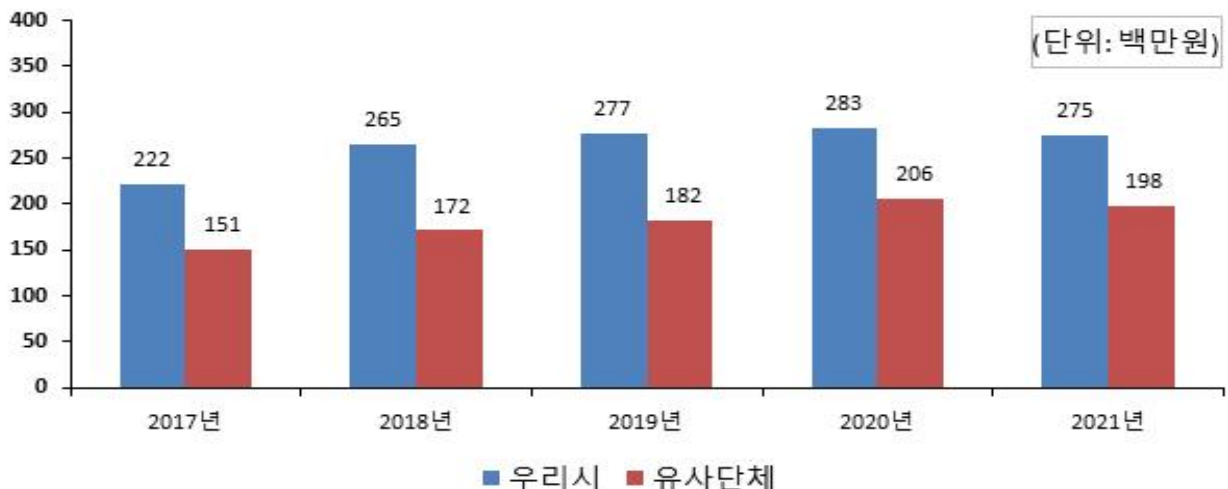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 계	의정운영 공동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 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63	275	101	94	80	-	104.56

❖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22	265	277	283	275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우리 정읍시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7,550	22,076	80.13%

❖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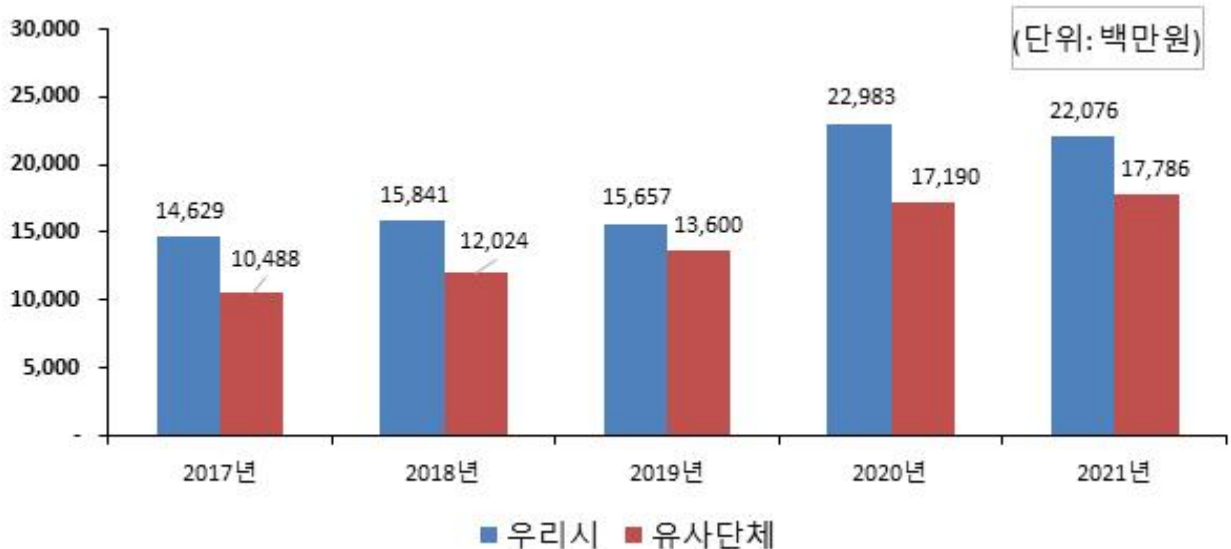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4,629	15,841	15,657	22,983	22,076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명)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840	2,509,200	1,364
공무원 일·숙직비	1,434	75,090	52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785	3,848,675	4,903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4,505	-274
인건비 절감	2,103	3,878
지방의회경비 절감	22	23
업무추진비 절감	114	4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536	-18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802	-1,119
민간위탁금 절감	-	-
예산집행노력(이월, 불용액 절감)	-	-2,921

-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86	1,839
지방세 징수율 제고	42	372
지방세 체납액 축소	-1,290	1,439
경상세외수입 확충	2,055	-94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829	940
탄력세율 적용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64	37

-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21년에 우리 정읍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 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1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21년에 우리 정읍시가 업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
“해 당 없 음”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21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

재정용어 해설

* 재정공시 관련 용어 해설 내용은 “가” “나” 다 “순으로 정리

◇ 가용재원	1
◇ 계 속 비	1
◇ 공유재산	1
◇ 국고보조금	2
◇ 국 세	2
◇ 기 금	2
◇ 기본경비	3
◇ 민간이전경비	3
◇ 민간투자사업	3
◇ 명시이월비	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4
◇ 보증채무부담행위	4
◇ 보 통 세	5
◇ 부 담 금	5
◇ 부 채	5
◇ 불 용 액	6
◇ 사고이월	6
◇ 성별영향평가사업	6
◇ 성인지 예산제도	7
◇ 세외수입	7
◇ 세 입	7
◇ 세입세출외현금	7
◇ 세 출	8
◇ 순계예산	8
◇ 순세계잉여금	8
◇ 시도비보조금	8
◇ 업무추진비	9
◇ 인 건 비	9
◇ 예 비 비	9
◇ 예 산	9
◇ 예산과목	10
◇ 예산대비 채무비율	10
◇ 예산안의 의결	10
◇ 예산의 전용	10
◇ 예산의 종류	11
◇ 예산의 확정	11

◇ 예산총계주의	12
◇ 의존수입	12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12
◇ 일반회계	12
◇ 일시차입금	13
◇ 잉여금	13
◇ 자본지출	13
◇ 자산	13
◇ 자체수입	13
◇ 재정분석	14
◇ 재정자립도	14
◇ 재정자주도	14
◇ 조정교부금	15
◇ 주민참여예산제도	15
◇ 중기재정계획	15
◇ 지방공기업	15
◇ 지방교부세	1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6
◇ 지방세	16
◇ 지방의회경비	17
◇ 지방재정조정제도	17
◇ 지방채	18
◇ 지방채 발행계획	18
◇ 지방채발행 한도액	18
◇ 지출결의서	19
◇ 지출원인행위	19
◇ 채무부담행위	19
◇ 채무상환비율	19
◇ 총계예산	20
◇ 추가경정예산	20
◇ 출연금	20
◇ 출자금	21
◇ 통합재정수지	21
◇ 투자심사	21
◇ 특별교부세	21
◇ 특별회계	22
◇ 회계연도	22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23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 가용재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 계 속 비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국고보조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국 세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 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세의 조세체계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 기 금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 기본경비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 민간이전경비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 보 통 세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 부 담 금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 부 채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와 부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 불용액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text{불용액} = \text{예산현액} (\text{전년도이월액} + \text{당해연도세출예산}) - \text{당해연도 지출액} - \text{이월금등} (\text{이월금} + \text{국·도비 집행잔액})$$

● 사고이월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용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 세 입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용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 세 출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 순계예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시·도비보조금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정원가산·기관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 인 건 비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 예 비 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 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 예산과목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 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예산대비 채무비율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총규모 / 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 예산안의 의결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 예산의 전용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 예산의 종류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 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 예산 :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

●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 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 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

● 예산의 확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 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 예산총계주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의존수입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진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 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일시차입금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예산의 3% 이내)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 잉여금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 자본지출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 자 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재정분석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유사 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서울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text{재정자립도} = \text{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text{재정자주도} = (\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 / \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조정교부금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써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의회경비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운영기준(2016년 기준) -

구 분	산 출 방 법
시 · 도	의원정수 × 2,000천원(기준액)
시·군·자치구	*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지방채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채 발행계획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함

● 지방채발행 한도액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 지출결의서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 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 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 채무상환비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로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text{채무상환비율} = \frac{\text{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text{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 \times 100$$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 + 채무부담상환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지급액

* 일반재원 = 지방세 + 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 + 경상적세외수입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부동산교부세

● 총계예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 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출 연 금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 출 자 금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 통합재정수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융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 회계연도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